

보도시점 (지 면) 7. 14.(금) 조간  
(인터넷) 7. 13.(목) 12:00

## 저소득·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'햇살론 특례운용' 시행

- 대출금리 최대 3.44%p 인하, 보증비율 100%로 높이고, 보증료율 0.2%p 낮춰  
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저소득·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7.14일부터 햇살론(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)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밝혔다.

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%, 보증료율 1%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,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%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,

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%에서 100%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.77~5.94%까지 적용되던 것을 2.5%로 최대 3.44%p 낮추고, 보증료율도 0.2%p 인하한 0.8%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.

보증한도는 운전·창업자금 2천만 원(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, 대환보증 불가)으로,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(☎ 1588-7365)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(단위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단위수협, 산림조합, 저축은행)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.

또한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'재창업 특례보증'의 지원대상에 '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'을 포함하고,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(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→ 세세분류까지 인정)한다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글로벌성장정책관실<br>기업금융과 | 책임자 | 과 장 | 강신천 (044-204-752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주창 (044-204-7528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무관 | 이민희 (044-204-7525) |

## 붙임

## 햇살론 및 재창업특례보증 주요 내용

### ☐ 햇살론(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) 비교

| 구분   | 일반운용  | 특례운용   |
|------|---|--|
| 지원대상 | ① (저신용 사업자) 개인평점 744점 이하<br>② (저소득 사업자)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대상채무 | 운전자금, 창업자금 및 <b>대환자금</b>  | 운전자금, 창업자금( <b>대환자금 불가</b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규모 | <b>연 3천억원</b><br>* 특례 1천억원 포함   | <b>1천억원</b>  |
| 보증한도 | (운전·창업*자금) 2천만원,<br><b>(대환자금) 3천만원</b><br>*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  | (운전·창업*자금) 2천만원,<br><b>(대환자금) 취급불가</b><br>*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     |
| 보증비율 | <b>(보증비율) 95% 부분보증</b>  | <b>(보증비율) 100% 전액보증</b>  |
| 보증료율 | (보증료율) 1.0%   | <b>(보증료율) 0.8%</b><br>* 단, '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.2%p 추가 감면(0.6% 적용) |
| 상환방법 |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|  |
| 취급은행 | 상호금융기관<br>* 지역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신협, 상호저축은행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대출금리 |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<br>금리상한 적용*<br>* 조달원가(1년 정기예금금리)<br>+ <b>가산금리 4.77~5.94%(7월 기준)</b> | 협약금리*<br>* 조달원가(1년 정기예금금리)<br>+ <b>가산금리 2.5%</b>                 |

### ☐ 재창업특례보증 개정 내용

| 개정 전   | 개정 후  |
|--|---|
| (보증대상)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 중이며,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<br><br>① 폐업 후 재창업기업<br>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(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) | (보증대상)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 중이며,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<br><br>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<b>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</b><br>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( <b>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</b> ) |